

「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(안 제3조 ~ 제4조)
- 3)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(안 제5조 ~ 제7조)
- 4)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(제8조 ~ 제13조)
- 5)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(제14조 ~ 제21조)
- 6)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(제22조 ~ 제2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목적 및 운영원칙을 명확히 하고,

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,

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.

○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후생복지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를 갖추려는 것으로,

검토결과,

지방공무원법 제77조1)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

조문의 내용 및 형식을 규정하여 저촉사항 등이 없으므로
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
- 1) 지방공무원법 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